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17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김한규 · 임미애 · 문대립
박상혁 · 복기왕 · 문진석
박민규 · 강준현 · 김승원
신정훈 · 오세희 · 이정문
박정현 · 김성범 · 서미화
윤준병 · 장철민 · 김태년
박홍배 · 백승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되어 내·외국인 출입국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하여 크

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상의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마다 새로운 관광상륙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u>제14조제3항 및 제5항</u>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관광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관광상륙허가”로, “외국인승무원”은 “외국인승객”으로 본다.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관광상륙허가로</u> 같음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 ----- -----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⑤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